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  
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3월 4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6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관련 [별표] <위임 전결사항>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5. 스포츠시설팀 ‘스포츠시설운영’ 항목 중 ‘(9)관리 시설에 부속된 의무실 관리’ 를  
팀장 전결로 신설한다.
- 11. 특화사업팀에 ‘자치위원회’ 항목과 ‘(1)청소년자치위원회 구성’ 과 ‘(2)사업운영 및  
간담회, 회의 진행’ 내용을 팀장 전결로 신설한다.
- 12. 청소년교육팀의 ‘전산관리’ 항목을 삭제하고, ‘스포츠시설운영’ 항목과  
‘(1)관리 시설에 부속된 의무실 관리’ 내용을 팀장 전결로 신설한다.
- 14. 청소년문화의집의 ‘집행·품의’, ‘수입관리’ 항목을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